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47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9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2조제3항은 입주자 지원 및 시설 관리 사무가 공공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“공공단체 또는 민간” 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위탁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함.
- 안 제14조제1항은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 구성 시 위원들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, “고려한다” 는 표현은 특정 성별이 위원들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나타내기에 구체성이 부족하므로, 동 조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, 해당 취지가 명확히 규정된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를 따르도록 보완함.
- 안 제14조제2항은 위원장 중 1명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, 동 개정조례안에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당연직 위원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포함하도록 보완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입주자 지원 및 시설 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함(안 제12조제3항).
-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 구성 시 “성별을 고려한다”는 표현을 삭제하고, 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(안 제14조제1항 및 제7항).
-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규정을 신설하고, 당연직 위원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4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③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 및 입주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안 제14조제1항 중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”를 “구성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 중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”을 “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을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과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2. 국내외 기업의 경영자
3. 대학교수
4.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

되는 사람

-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2조(입주자 지원사업) ①· ② (생략)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<u>민간</u> 에 위탁할 수 있다.	제12조(입주자 지원사업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공공단</u> <u>체 또는 민간</u> -----.	제12조(입주자 지원사업) ①·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<u>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</u> <u>활성화 및 입주자 지원사업의</u> <u>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</u> <u>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</u> <u>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</u> <u>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</u>
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 .	제14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성별을 고려하여</u> <u>구성한다</u> .	제14조(구성) ① (<u>현행과 같음</u>)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 부시장과 <u>위원 중 호선된 사</u> <u>람 1명</u> 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<u>위원 중</u> <u>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</u> -----.	② ----- ----- <u>위촉직</u> <u>위원 중에서 호선하는</u> ---- -----.
③ 위원은 시의원과 국내외 유 수기업의 최고경영자, 대학교 수 등 디지털미디어시티 발전 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 <u>위촉직 위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③ <u>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</u> <u>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</u> <u>위원은 행정1부시장과 디지털</u> <u>미디어시티 활성화 업무를 추</u> <u>진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</u> <u>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 1. <u>서울특별시회의의원</u> 2. <u>국내외 기업의 경영자</u> 3. <u>대학교수</u> 4. <u>그 밖에 디지털미디어시티</u> <u>활성화와 관련하여 식견과</u> <u>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</u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④ (생략)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u> ⑥ (생략) <u>< 신설 ></u>	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담당사무관이 맡는다.</u> ⑥ (현행과 같음) <u>< 신설 ></u>	<u>사람</u> ④ (개정안과 같음) ⑤ (개정안과 같음) ⑥ (개정안과 같음) ⑦ <u>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기업,연구소” 를 “기업, 연구소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” 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제4항” 을 “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” 을 “「외국인 투자 촉진법」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” 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” 를 “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5조” 를 “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1조” 로 한다.
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

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③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 및 입주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위원 중 호선된” 을 “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담당사무관으로 한다” 를 “담당사무관이 맡는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을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과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2. 국내외 기업의 경영자
3. 대학교수
4.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-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6조제4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필요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</u> <u>의</u> 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<u>뜻</u> 은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입주자와 계약 등의 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디지털 미디어시티 외의 <u>기업, 연구소</u> , 교육기관 등에도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<u>기업, 연구소</u> ----- -----.
제9조(택지의 공급기준) ① 시장이 택지 공급 을 하려면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8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</u> 및 <u>제3항</u> 을 따른다.	제9조(택지의 공급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</u> <u>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</u> ----- -----.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 <u>의2제4항</u> 에 따라 택지의 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 「 <u>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</u> 」 제13조 <u>의2제2항</u> ----- -----.
제10조(외국인투자기업 지원) 시장은 디지 털미디어시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「 <u>외국인투자촉진법</u> 」 <u>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</u> 을 지정 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	제10조(외국인투자기업 지원) ----- ----- ----- 「 <u>외국인투자 촉진법</u> 」 <u>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</u> ----- ----- -----.

제11조(중소·벤처기업 지원) 시장은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)과 벤처기업의 입주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·개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

3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

4. (생략)

제12조(입주자 지원사업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호선된 사람 1명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시의원과 국내외 우수기업의 최고경영자, 대학교수 등 디지털미디어 시티 발전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11조(중소·벤처기업 지원) -----
-----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

3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1조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입주자 지원사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 및 입주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위촉
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-----
-----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과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(생 략)

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⑥ (생 략)

< 신 설 >

제16조(회의 등) ① ~ ③ (생 략)

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위원회 관리·운영과 실무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19조(자문단 운영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1. 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

2. 국내외 기업의 경영자

3. 대학교수

4.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담당사무관이 말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6조(회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-----.

제18조(운영세칙) -----
-----필요한 -----
-----.

제19조(자문단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-----.

제21조(시행규칙) ----- 필요한 -----
-----.